

##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

제정 2019. 1. 10 조례 제1897호  
일부개정 2020. 7. 2 조례 제2034호  
일부개정 2021. 3. 29 조례 제2118호  
일부개정 2021. 11. 3 조례 제2188호  
일부개정 2022. 4. 13 조례 제228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이념)** 이 조례는 청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청년”이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,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- “청년정책”이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, 능력개발, 권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- “청년단체”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“청년시설”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,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

##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

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6조 삭제 <2022. 4. 13>

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) ① 시장은 「청년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3>

1.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
2. 청년의 능력개발
3.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
4. 청년 창업의 활성화
5. 청년 복지의 증진
6. 청년의 주거안정
7. 청년의 부채 경감
8. 청년문화의 활성화
9. 청년의 권리 보호
10. 청년시설의 설치 · 운영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4. 13>

제8조(청년정책 연구 · 기초조사 등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 ·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,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1. 11. 3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2. 4. 13>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
2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
3.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
4.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[제목개정 2021. 11. 3]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(互選)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<개정 2021. 3. 29, 2021. 11. 3>

1. 당연직 위원: 교육·문화, 복지·여성, 일자리·산업, 주택 등 청년 관련 업무 담당 실장·국장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.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  - 가.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나.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
  - 다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
  - 라.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청년활동가
  - 마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
제12조(공동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: 연 2회

2. 임시회의

가.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나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, 분과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④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15조(청년정책네트워크)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(이하 “네트워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1. 3>

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

2. 청년문제의 발굴,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

3.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

4.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

시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7. 2]

[제목개정 2021. 11. 3]

제16조(청년지원센터 설치 · 운영)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용인시청년지원센터(이하 “청년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2.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
  3. 청년의 진로탐색과 취업 및 창업지원
  4.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
  5. 국내 · 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
  6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용인시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 · 출연 기관(이하 “출자 · 출연 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[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제17조(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)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제18조(청년의 능력개발)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 · 경제 ·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창의적 · 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[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제19조(청년의 고용촉진 등)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

##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

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업 적성 탐색 및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**제20조(청년 복지의 증진)** ① 시장은 청년의 보건, 안전, 결혼, 보육, 교통 등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,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**제21조(청년의 주거안정)**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**제22조(청년의 부채경감 등)** ①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**제23조(청년문화의 활성화 등)** ① 시장은 관련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

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제24조(청년의 권리보호 등)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제25조(청년시설의 설치 · 운영) ① 시장은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 · 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·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시설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· 출연 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[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제25조의2(청년 지원 사업)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1. 3>

1. 신용회복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
2.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
3. 그 밖에 청년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업

[본조신설 2021. 3. 29]

제26조(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가 등이 추진하는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·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용인시 지원방법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[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##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

제27조(청년의 날 지원) ① 시장은 「청년기본법」 제7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규정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청년의 날 기념행사
  2. 청년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
  3.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
  4.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② 시장은 청년의 날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3>

[본조신설 2021. 11. 3]

제28조(협력체계 구축)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[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[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. 11. 3]

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[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1. 11. 3]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7. 2 조례 제203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3. 29 조례 제211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1. 3 조례 제218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4. 13 조례 제228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